

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허부조직으로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 인권위와 의문사위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무엇일까?

□ 인권침해 조사의 법적 한계

인권위법 제2조에 규정된 인권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인권위법 제30조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유권 영역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때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현재의 재판은 또한 제외된다). 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는 사인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때는 또한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시설 이용 부분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다. 이것이 인권위법의 한계 중 하나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의 방법에 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첫째,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거나 이미 수사를 종결한 인권침해사안을 통째로 제외한 점이다. 둘째, 인권위의 조사방법으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채택한 점이다. 셋째, 수사정보기관이 손쉽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넷째,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다.(곽노현 글 인용)

이것 외에도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인권위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로 미룬다.

□ 애초 인권단체가 바랬던 인권위 그리고 현재

법적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는 아래 세 가지 부분에서 인권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권리구제 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새로운 구제절차 제공 △반인권적인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권고·감시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적인 인권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이를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전체 진정 가운데 1702건, 즉 절반이 넘는 사건이 미해결된 상황이며, 그나마 구제가 결정된 사건은 28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무처 구성 지연과 통합적 정보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간 소요”를 원인으로 제시하며, “점점 사건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각하 처리된 사건이 많았다(처리건수 대비 89%)”며 “현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하루소식 11월 28일자)

수치상으로 보면 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새로운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문자 그대로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지 모르나,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등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법제개선 권고에 대해서 인권위는 마음만 먹은만큼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조사대상에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지만 법제개선 권고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개선 권고 업무도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을 심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검토요청이 들어온 법안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홍신 의원이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위원회는 의원발의 입법이란 이유로 의견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NGO들과의 거리두기를 이유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해 당사자와 거리를 두는 것을 오독한 것”이라며, “올바른 정책생산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금까지 공익적 관점에서 일해왔던 인권단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문제 등 사회권에 대해 인식의 깊이가 얇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제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이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다.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과반수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인권하루소식 10월 10일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최근 인권만화와 인권영화를 만든다고 떠들썩한데, 이는 교육협력국의 작품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의 작품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인권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외면한 채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기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인권위법 제19조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이라는 대외협력을 인권위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업무도 인권위처럼 명시적으로 대외협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는 인권위가 제기되는 인권침해 사안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과다. 인권위의 직원이 현재보다 2배나 증원된다 하더라도 인권위 혼자서는 모든 인권침해 사안을 담당할 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적극적인 연대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설립초기 특정 인권단체의 의도적 배제에 따른 '원죄'로 인해 인권단체와의 관계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지 인식하지 않으며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인권위 활동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가인권위 출범 1주년을 기념으로 벌인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서 인권단체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 토론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토론자로 초청했을 뿐이며, 그나마 교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회는 교수와 변호사 일색이었다. 이는 인권위가 활동가들을 자신의 업무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또 하나의 서글픈 현실이다.

□ 인권옹호 기구로서 인권위...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권단체는 인권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인권위가 바로 서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인권심판 기구가 아닌 인권옹호 기구로 인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권위는 조사관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권고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권위법 해석을 가능한 엄격하게 하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가능한 다른 기관과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구제조치가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는 꼴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일어난 곳을 발로 찾아다니며, 심판자의 입장이 아닌 옹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하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다시 발로 뛰어 다니는 모습이 절실하다.

- 인권위의 전략적 활동방향에 대한 공론화
 - 2002 인권위 기획사업, '버림받는 아동, 학대받는 노인'
 - 검·경에 의한 인권침해
 -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관한 공개진단
- 적극적인 법 해석
 - 제30조 1항 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제32조 1항 4호: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 4항: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 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
 -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50조 (처리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권위 개방적 운영
 - 진정사건을 제외한 논의안건 공개 원칙
 - 회의록 등 비공개 안건 논의 결과 사후 공개

- 전원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등 회의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 및 기자 정례간담회
- 장기과제: 인권위 구조개혁 및 인권위법 개정

□ 인권단체 대응전략

- 인권위 전원위원회 및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 방청 및 결과 공유
- 인권위 대응전략 연구모임 구성
- 인권위원 개개인에 대한 1대1 감시활동
- 모의 인권위원회 : 인권단체의 광범한 추천을 받은 민간인권위원 선정
- 진정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성명 및 의견개선
- 인권위 전략적 활동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 인권위 감시 홈페이지 및 메일링리스트 개설
- 사회권 등 사건 발굴 및 진정
- 인권위 개방적 운영규칙 등 제안

소주제토론6 ▶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형사소송절차와 인권)

우리 운동이 경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인권운동과 경찰, 경찰과 인권

오 창 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경찰 일반 현황중 함께 생각할 몇가지

1. 인원(2000년말 현재 총 146,712명)

이중 61.8%인 90,670명이 경찰관/ 34.5%인 50,609명이 전.의경/ 3.7%인 5,433명이 보조인력(고용직/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22명(1991년 516명에 비해 큰 변동폭 없음)

계급구성별 인력구성은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3명/ 치안감 20명/ 경무관 33/ 총경 394명/ 경정 1,206명/ 경감 1,997명/ 경위 8,590명/ 경사 11,094명/ 경장 30,204명/ 순경 37,128명

: 승진직체의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 경위이하가 전체의 96%

2. 조직

경찰청(본청)에 6국) 경무기획국(기획과/예산과/법무과/인사교육과/장비과) 방범국(방범기획과/ 방범지도과) 수사국(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마약지능과/과학수사과/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비교통국(경비1,2과/ 경호과/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정보국(정보1,2,3,4과) 보안국(보안1,2,3과)

4관) 공보관 감사관(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외사관리관(외사1,2,3 담당관) 정보통신관리관(정보통신1,2담당관), 2심의관) 교통심의관 기획정보심의관, 7담당관 26개과

소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교육관 초급간부인 경위. 경사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 및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교육 담당

, 중앙경찰학교) 신입교육(통상 6개월) 및 전.의경교육 담당

,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특별지방행정기관 - 14개 지방경찰청 - 230개 경찰서 - 2,914개 파출소(서울 441개/ 전남의 경우 310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3개의 지방분소

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행자부내에 설치)

3. 예산

2000년 현재 3조 6,744억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 전체 정부예산의 4.2%를 차지
이 예산은 일반회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 집행하는 예산들(경찰관서의 증.개축등 시설
관련경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교통관련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운전면허
관련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을 포함한 것

4. 형사범 검거 현황

112 신고건수는 2000년 한해동안 3,178,190건으로 1일 평균 8,707건에 해당

5. 경찰장비

- ㄱ. HDT(휴대용 조회기, hand data terminal) - 외근경찰관이 휴대, 현장에서 즉시 사람이나 차량의 수배여부 확인. 이를 통해 2000년 한해동안 55,962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 앞으로 휴대폰과 조회기를 통합한 단말기 도입 예정
- ㄴ. MDT(차량컴퓨터단말기, mobile data terminal) - 차량에 설치. 사람, 차량, 운전면허등에 대한 데이터 조회, 출동현장약도등 확인
- ㄷ. ANI(신고자전화번호판독장치,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 112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자동 검색

6. 집회 시위 관련

2000년 총 검거자 수 8,139명/ 구속 207명/ 불구속 3,918명/ 즉심 37명/ 훈방 3,841명/ 이첩 86명

< 경찰에 요구되는 인권 >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세계인권선언 및 UN의 경찰관련 인권기준과 원칙들에 기초하여, [법 집행 공무원을 위한 10가지 기본 인권기준]을 작성하였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경찰 10대 인권지침]을 작성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지침을 소개하는데 앞서 경찰업무에 직결되는 UN의 각종 인권관련 규칙과 지침 및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UN 경찰행동강령

UN 경찰 행동강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UN 지침
탈법적, 자의적 및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조사를 위한 UN 원칙
모든 사람을 강제적 행방불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UN선언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UN 협정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협약
 - 경찰관의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UN 기본수칙
 -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UN 표준규칙
 - 모든 종류의 구금이나 구속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UN 규약집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
 -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 규칙
 - UN 대여성 폭력 근절 선언
 -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UN 선언
 -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근절에 대한 UN 협약
- 자, 그러면 이제 경찰 10대 인권지침을 살펴보자.
- ①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가출인 및 사회적 소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모든 범죄 피해자를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오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필요최소한 정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경찰은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에는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⑥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되며, 체포를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⑦ 경찰은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 ⑧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결코 어떤 경우라도, 고문 혹은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 ⑨ 경찰관은 결코 '탈법적 처형'을 행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지시하거나 은폐해서도 안된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⑩ 경찰관은 위 기본인권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상급자나 검찰, 혹은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찰과 우리 운동의 일상적 만남

- * 범죄수사의 인지시, 예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 휴대용 신분조회기의 등장/ 차적 조회등/ 불법적 불심검문시에 야기되는 인권문제/ 일부 지문조회기의 등장
- * 감청 및 통신정보조회등의 통신수사시(현재 유선전화는 물론, 이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 등 거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 상태)
- * 피의자(참고인, 피해자)심문과정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보장/ 면회/ 묵비권/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의 수사/ 당연히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사/ 진술 조서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나, 읽은 시간은 충분한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문 날인의 강요/ 불필요하고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출석요구(소환조사 지양 -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진술기회의 확대 필요)/ 장애인, 외국인 조사편익/ 지연없는 즉시 조사
- * 피의자 유치제도 - 반인권적인 유치장 환경(식사, 용변, 취침, 조명)/ 검찰의 수사권독점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치남발/ 유치장 입감시의 검신
- * 체포등 - 구타, 특히 검거후 행해지는 보복성 구타/ 긴급 체포의 남발/ 미란다원칙 불고지 - 형식적이거나 오히려 권리를 침해, 위축시키는 방식의 고지
- * 집회, 시위 - 과도한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 - 불법행위만 처벌하면 그만인 것을 / 집회,시위의 사실상 허가제 운영/ 범외 단서조항 요구
- * 시국, 공안사건 - 대공분실의 시대착오적 역할/ 학생들을 비롯한 잦은 검거/ 장안동, 옥인동, 홍제동, 남영동이 1년에 1,2건 정도 다루는 실정 - 예산과 인력을 지키려는 발버둥
- * 경비용역업체의 관리 - 노동현장, 철거현장에서의 용역깡패 기승
- * 불법체류사범(다수의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색출 - 비인도적 단속/ 무차별적 보복적 단속
- * 불필요한 정보수집 활동 -운동권의 관성적인 협조, 상부상조? 누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 * 보안관련 업무 - 보안관찰업무, 노동, 학원까지 죄다 보안이다!

경찰을 알고 이해하고, 끌어들이자

- * 경찰자료 - 정부간행물센터(서울의 경우 교보문고)에서 판매/ 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수 자료 등재/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 * 밀면 밀리는 조직 - 여론에 민감하며, 검찰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심하고, 힘도 없는 조직/ 노조는커녕 직장협의회조차 없는 조직

- * 경찰도 인권피해자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 격무, 박봉, 승진적체, 내근 인력의 비대화, 외근시 인센티브조차 없고, 파출소 근무는 좌천으로 여기는 분위기...
- * 상당히 넓은 대민 접촉의 폭
- *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 - 납세자로서 경찰비용을 부담하고, 주권자로서 경찰에 권력을 위임해 주었고, 경찰서비스의 수혜자이다.
- * 우리 운동과 경찰과의 관계 - 상당히 어근스럽게, 주권자, 납세자, 서비스 수혜자답게/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가면서(인권연대, 청주정평위)
- * 경찰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속화, 적극적인 민간 참여
- * 민주노동당의 경찰수사권에 대한 입장 - 반대한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검찰은 신뢰 할만한가. 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인가.
- *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다.

부록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 (불심검문)

-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

제4조 (보호조치등)

-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6·8·8>
-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6·8·8>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8·12·31>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3. 그 장소에 있는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88·12·31>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①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내에 출입할 수 있다.
- ②홍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실의 확인등)

-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개정 96·8·8, 99·5·24> [시행일 99·11·25]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지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제10조의2 (최루탄의 사용)

-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책임자는 최루탄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9·6·16]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시행일 99·11·25]]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삭제 <99·5·24> [본조신설 89·6·16] [[시행일 99·11·25]]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88·12·31, 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제11조 (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88·12·31>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88·12·31]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주제토론7 ▶ 과거청산의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운동

* 이 글은 새사회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이해

오영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문제의식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과거청산 문제에 관한 한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미청산된 과거의 백화점¹⁾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과거청산 시도들은 정치적 역관계의 부산물로, 개별사안별로, 물적 보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과거청산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권한미비와 보수세력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고 운동진영 내에서도 아직 과거청산 과제의 범위, 해결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시도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과거청산 과제를 총체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운동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와 인권운동이 공동으로 의무를 갖고 있는 국제인권기준²⁾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들을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기준 비준현황과 태도를 검토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과거청산 과제들 중에서 현안으로 거론되는 민간인학살과 의문사 진상규명, 공소시효배제운동에 관련되는 국제인권기준에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1)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제3회 학술심포지엄 '20세기 과거청산과 NGO' 자료집>, 2000

2) 세계인권선언에 법적 구속력과 도덕적 권위를 아울러 갖춘 조약으로 만들어 그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한 것이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이고 1976년 1월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사회권규약)'과 동년 3월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자유권규약)', 그리고 B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10일자로 상기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다. 추가로 1991년 7월 11일자로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B규약에 대한 제2차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한국은 미가입 상태다. 이 글에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산하에 조약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있는 주요 인권규약을 포괄하여 임의로 '국제인권기준'으로 통칭한다.

1. 과거청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1.1 집단살해방지처벌협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 1948년 12월 9일 채택하여 1951년 1월 12일 발효했고, 당사국 수는 2002년 현재 132개국, 대한민국 적용일은 1951년 12월 12일이며 전문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집단살해가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국제법상 범죄라고 결의한 선언을 고려하고, 모든 시기 집단살해가 인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 같은 고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있다.

각 조항 중 과거청산운동에 시사점을 주는 조항들을 살펴보자. 제1조는 집단학살이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재확인하고³⁾ 제2조는 [집단학살의 정의]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써 행해진 행위”로, 집단구성원에 대한 살해,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 부과, 집단 내 출생방지를 위한 의도적 조치 부과, 집단 아동의 강제 이동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과 근현대사에서 보여지는 국가폭력이 대부분 해당된다. 제3조는 [처벌행위대상]으로 집단살해, 공모,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미수, 공범까지 규정한다. 제4조는 [처벌대상]으로 헌법상 책임 있는 통치자나 공무원, 사인을 불문하고 있다. 제5조는 [체약국 의무]로 각자 헌법에 따라 유효한 형벌규정을 위한 입법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제6조는 [심리 주체]로 집단학살이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ICC)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고문방지협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은 1984년 12월 10일 채택하여 1987년 6월 26일 발효했고 2002년 현재 당사국 수는 123개국이며 대한민국은 1995년 2월 8일부터 적용됐다.

협약 전문에는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헌장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를 촉진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고려하고,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인권규약⁴⁾과 이러한 행위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⁵⁾에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실효적

3)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4)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5)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 총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

이기를 희망함을 밝히고 있다.

이 협약은 총 3장 33조로 제1장(제1조-제16조)에는 고문 범죄 등에 대한 일반규정, 제2장(제17조-제24조)은 고문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장(제25조-제33조)은 협약 비준 절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규정에서 주목할만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1조 [정의]에서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특별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폭력행위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조는 일반 기준으로 1항에 고문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밖의 조치를 취할 것, 2항은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정당화에 원용될 수 없으며 3항에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이 고문정당화에 원용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제4조는 [범죄대상 및 처벌] 규정으로 모든 고문행위가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 미수,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예방 교육]을 규정하여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하며,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제13조는 [체약국 의무]로 고문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문에 대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며 고문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권리와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장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고문피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15조에는 고문으로 입증된 진술이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1.3 전쟁범죄공소시효부적용협약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은 1968년 채택하여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고 2002년 현재 당사국 수는 44개국이고 대한민국은 미가입 상태다.

이 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각종 결의⁶⁾를 상기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소추

별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

6) 국제연합 총회의 전쟁범죄자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6년 2월 13일자 결의 3(I), 1947년 10월 31일자 결의 170(II),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과 동 재판소의 판결에서 승인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 원주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인종차별정책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백히 규탄한 1966년 12월 12일자 결의 2184(XXI) 및 1966년 12월 16일자 결의 2202(XXI), 전쟁범죄자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

및 처벌과 관련된 중요선언, 문서 또는 협약 어디에도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의 효과적 처벌은 그러한 범죄의 방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신뢰의 고취, 국민간 협력 촉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죄에 대해 일반 범죄의 시효기간에 관한 국내법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범죄 책임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저지시키므로 이것이 세계 여론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고, 국제법상의 원칙이 이러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보편적인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제1조는 [공소시효 배제 범죄 범위]로 “전쟁범죄”와 1949년 8월 12일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 “다음행위가 범행지국의 국내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지라도...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 군사적 공격이나 점령 그리고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추방,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는 [처벌대상]으로 범행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정범 또는 공범 가담, 타인을 교사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국가기관의 대표와 사인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국가기관의 대표로 한다. 제3조는 체약국 의무 중 [범죄자 인도]로 범죄자의 인도가 국제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기타 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제4조는 체약국 의무 중 [제도적 조치]로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시효제한 또는 다른 제한들이 협약 제1조, 제2조상의 범죄의 기소 및 처벌에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과 그러한 제한이 있을 경우 폐지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기준 비준현황과 태도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국제인권기준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태도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이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시에 보이는 특징과 법적 적용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⁸⁾

한국정부가 주요 6대 인권조약⁹⁾에 모두 가입한 것은 1995년 이후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비준하면서 나타나는 관행 또는 태도는 (1)국내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이 국제인권조약

지른 자의 처벌에 관한 1965년 7월 28일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704D(X X X I X) 및 1966년 8월 5일자 결의 1158(XI I)

7)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I)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에서 확인된 전쟁범죄~

8)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요약, <국제법 평론 제12호>, 1999

9)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협약),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협약)과 부속 의정서

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입하며 (2)특정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시 국내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 상충되는 국내법을 해당 조약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대신 상충된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하고 가입비준하여 인권관련 국내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관행 또는 태도를 결여하고 있으며 (3)가입비준시 국내법상의 문제법이나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의 사전 비교검토를 매우 소홀히 하며 (4)국내법 개정을 통한 발전적인 유보철회는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의 법절차에서의 적용상황도 (1)헌법의 부차적 의미로 존재하고 (2)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인용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 (3)국제법과 국내법관의 관계가 비친밀한 유형을 띠며 (4)사법부의 관료적 구조에서 개별 법관이 국제인권법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1월 13일 유엔대표부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의 83번째 당사국이 됐다. ICC가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를 국내법정이 소추, 재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가동하여 미래의 전쟁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나, 여전히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를 과거청산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서’의 권고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있다.¹⁰⁾ 칠레와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과테말라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활동과 권고를 보면 그 기준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으로 하고 있고, 인권협약을 반영한 헌법규정의 효력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국제적 인권옹호 메커니즘과 주요인권협약에 대한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¹¹⁾ 이후에는 국가기관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은 정부에게는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사회의 책임 주체로, 인권운동에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원칙의 옹호자들로 규정을 준수하고 확대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과거청산 운동은 한국 정부가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연구하고, 감시하며 촉구하는 한편 아직 채택하지 않은 국제인권기준을 비준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0) 권고5 에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하는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서 152p

11)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보고서팀, “외국진실위원회 보고서 권고사례 및 관련자료”, 2002. 5

과거청산을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

이 창 수 (새사회연대 대표)

1. 적극적인 문제 제기

과거청산을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현학적인 접근이나 도덕적인 의무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운동의 현실이었다. 과거청산은 '역사적 의식', 또는 '의식적 역사'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현시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역관계의 그물망으로 지키려는 세력과 그 대각점에서 있는 세력과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과거청산 또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박제된 과거의 사실에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청산할 과거'('낡은 것')는 일부 학자와 현 질서에 비판적인 기득권층이 주도하는 운동이 되거나, 과거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피해자 또는 역사속에서 패배한 수동적인 '피해자'들의 운동에서 전개되어 왔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과거청산 운동은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인 종교인과 비판적인 지식인에 의한 대리주의적 청산 모델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한을 가진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대중추수적인 청산 운동'을 벌여 왔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과거청산 또는 그 운동이 과연 법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번도 혁명적인 단절을 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과연 '합법적인 과거청산'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을 해야 한다.

다른 문제를 지적해 보자. 과연 우리에게 청산될 과거를 대체할 만한 잣대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박한 '생명윤리'이거나 '민중에 대한 맹목적 사랑' 정도 일 것이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 국가폭력을 제어하거나 단죄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 청산이 아니다. 그것은 법의 재해석 또는 재적용에 불과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현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전문가 집단에 과도한 기대와 역할을 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다른 문제를 보자. 과거청산의 대상과 방식을 구분하고 규명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청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현재의 부정을 극복한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것 또는 그 질서(the new or the new order)'의 형성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거청산 및 그 운동을 주창하는 그룹들은 - 피해자 집단이든, 사회적 제3자이든 간에 -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것의 잣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 보자.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4·19직후 있었던 '반민특위'가 과연 과거청산을 위한 조직이었는가 아니면 극우보수체제에 빌붙어 있던 낡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민주당 세력의 정치

적 공격'이었는데? 그 실패 원인을 보면 간명해 진다.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과거 청산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 진다. 하나씩 검토 해 보자.

2. 두 과거청산 과제의 대응 평가

● 일제하의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극복하는 일은 일제 부역자 척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못했는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또한 미국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합의된 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전략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저항해야 할 기준 즉 합의된 철학적인 지침이 없었다. 그러면 그 철학은 무엇이었는데?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의 존재'에서 찾아야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일제 부역자의 가족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비난이 되는 봉건적인 사회이다. 운동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은 농후하다. 운동의 힘이 바로 봉건적인 도덕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폭력성과 그 희생자로서의 '사람'의 맥락에서 벗어난 운동은 언제나 외부의 조건에 규정되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운(변화)'하고 '동(이동)'한다.

일제하의 강제 동원 희생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론'만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에 대한 인권적인 해답은 주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 -> '재발방지'라는 경로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필요성 또는 방법론 상의 형식 논리만을 보이는 것이다. 현실 강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가폭력(일본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희생자들을 '국가(한국)'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제도적·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실적인 강제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시혜적이거나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인권운동이 사람에게 착목하지 않고 제도에 착목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체제를 위한 운동이 되어 버린다. 또 일제하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과거청산이 다 된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또는 '인권'의 한 축으로 '식민지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적 문제'로 제국주의의 희생자 문제가 다루어지는 지를 더 착목해야 한다.

● '3년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제국주의 전쟁(일제가 벌인 이른바 태평양 전쟁)과 해방전쟁(이른바 Korean War)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른바 '한국전쟁'의 희생자 문제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 문제는 전쟁과 민중의 생존 여부(생명권)의 문제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과거청산의 과제를 보면 그 속에서 생존한 자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과거청산의 현재성을

더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 후손 - 오늘의 세 세력의 그물망 관계 - 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쟁을 국가의 본질적인 습관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전쟁 희생자들의 문제가 왜 앞으로 미래의 문제인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쟁 전후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사람'이 죽은 문제로만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도주의법 체계에서 말하는 '집단학살'과 '침략전쟁'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과거 청산 방향이 도출된다.

그런데 '3년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법적 -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 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체질적으로 폭력성을 갖고 있는 국가(국가폭력) 또는 그 방조세력에 의한 학살과 전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렇게 보면 해결 방법은 과거의 국가와는 다른 국가 - 현실적으로 정치세력 - 가 해결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제하는 사회적 힘 또는 세력의 저항 또는 평화를 위한 구조 형성으로 집약된다.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더러운 전쟁'(a dirty war)의 결과를 '양심적인 정치세력' 또는 '국민의 합법적 대리자로서의 국가'가 사후적으로 청산/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전히 가해자가 해결자가 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의 희생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전쟁'(the imperialistic war) 즉 2차 세계대전의 변형된 형태인 국내적인·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냉전 초기 단계의 양상(first stage mode of a cold war)의 희생자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전쟁 구조에서 해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3년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새로운 위기의 고착화'를 극복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는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거나 일체의 국가폭력을 거부하는 '반전평화·반폭력인권'의 맥락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을 잊거나 또는 잊혀지거나 전쟁 희생자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결국 우리는 전쟁과 그것을 수행한 국가의 폭력을 영원히 망각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미래의 전쟁인 '3년 전쟁'을 꺼내야 한다. '거창 신원면 사건, 4·3학살'은 바로 고통없이 '가해자인 국가'가 쉽게 희망을 제시한 경우다. 바로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통의 기억'을 지금 함께 하고자 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3. 과거청산을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

우리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의 과거 청산운동이 법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결국 누가 법제도를 만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점을 검토했다. 또한 누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청산의 잣대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청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 인권 활동가 : 누가 과거 청산을 하는가?

우리는 전쟁학살이든 외세에 의한 학살이든 또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든 간에 혁명적 단절의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과거 청산의 경로를 찾아내는 핵심을 주체 형성이라고 본다.

과거청산의 주체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해자 집단 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지식인 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연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과거청산은 억눌린 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단기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억눌린 세력 - 구조적인 인권침해 노출 집단 - 의 연대는 청산할 과거를 만들어 낸 집단을 극복할 만한 현실적 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유용한 전술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세력 가운데 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은 '인권운동진영'과 그 구성원들이다. 유족과 당사자 등 피해자 집단은 과거청산이라는 의식적 역사 속에 있다가 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기 위한 방편 속에서 청산할 과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피해자 집단은 과거 청산의 중요한 사회적 추진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추진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세력이다. 인권운동이 현재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구조라고 파악한다면 과거 청산 문제가 인권의 가장 정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지식인과 종교인도 과거청산의 주요한 지적·도덕적 동력이다. 하지만 그 전제가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조치라면 과거청산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 인권 : 과거청산의 잣대

그러면 낡은 것(과거청산의 대상)을 설정해 보자. 낡은 것은 실체를 갖춘 유형물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tendency)이고 정치경제적인 구조(social formation)이다. 여기서 낡은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속에 내재된 '폭력 구조의 공간'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과거청산을 하고자 하는 세력의 공간은 협소하다. 따라서 이 협소한 공간 즉 대각선에 있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선이 형성된 지점에서 '우리'와 '그들'의 세력이 형성된다.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 관념적이고 묵시적인 동조세력은 예비군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현재의 전선을 총괄하는 국가폭력의 주개념은 '인권'이다. 바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과거청산 운동이 된다. 결국 과거 청산운동은 곧 인권운동이 되고, 인권운동은 바로 과거 청산운동이 된다.

● 자율성을 가진 운동 : 현시기의 과거청산운동의 방향

협소한 공간속에 있는 인권운동은 어떻게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적어도 과거청산을 하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역전시키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권운동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정 요구 투쟁을 통해서 국민 대중들의 인권의식을 촉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향적이고 구조적인 과거청산의 대상은 유형화된 어떤 것으로 조작적·실천적(operational or practical) 가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진상규명을 인권운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의문사 문제의 경우는 더 그렇다. 결국 과거청산은 가까운 것부터 해야 하지만, 인권운동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먼 것이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국가의 공인과 진상규명의 현실성 때문에 인권운동이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것은 결국 당대 지배 세력의 한정된 시혜 - 진상규명 없는 명예회복 - 밖에 얻을 것이 없다. 그것은 결국 과거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은 그대로 있고, 형식적인 피해 구제에 그칠 것이다. 그것은 과거청산의 현재성인 구조적인 재발방지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도전하는 세력은 언제나 연대 - 일시적인 제휴와 같은 통일전선전술이 아님 - 에서 출발한다. 역으로 연대하지 않는 세력은 적지 않은 세력이다. 현실에서 이 적지 않은 세력은 기득권 세력을 지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설적이게도 민간주도의 과거청산진상규명위원회를 인권운동이 자기 임무로 삼아야 할 때다.

■ 소주제토론7 정리

과거청산의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운동

정리 : 오 영 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 발제 1. 과거청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이해 : 오영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 발제 2. 과거청산을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토론 1. 과거청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쟁에 들어가며 : 김학철(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 참가단체 :

국제민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 논의내용

<발제1. 과거청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이해>

; 국가는 국제사회의 책임주체로서, 인권활동가에게는 보편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 중 과거청산 현안과 관련된 '집단살해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전쟁범죄 공소시효부적용협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부가 기비준협약을 준비하고 미비준 협약을 채택하도록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함.

<=> 국제인권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된 사례도 있으나 국내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는 은폐조작하는 한계가 더 문제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국내 적용에 대해서 인권운동 내에서도 'ICC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됨

<발제2. 과거청산을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

; 그동안 과거청산운동은 주체에 따라 기득권에 대한 비판세력들의 '대리주의적 청산'이거나, 피해자나 과거 운동의 패배자들이 주도하는 '대중추수적 운동'임. 주된 문제는 '합법적인 과거청산이 가능한가?'인데, 집단학살, 의문사 등 인권침해 가해자인 국가에 공식조사와 진상규명, 사

최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테두리에서는 국가가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으로 오류임.

따라서 누가 과거청산을 할 것인가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국가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인권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며, 과거청산의 잣대는 과거와 연결된 현실공간인 인권으로 삼아야 함. 그리고 현재 과거청산 운동의 방향은 인권운동이 주체가 되어 함. 국가공인과 진상규명의 현실성 때문에 인권운동이 진상규명 노력을 중단하면 당대 지배세력의 시혜적 과거청산에 머물게 됨.

결국 힘의 문제로 보아 법제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독자적인 '과거청산진상규명위원회'를 건설해야 함.

<=> 과거청산이 입법중심으로 가서는 안되는 데 공감. 그러나 국가를 과거청산의 주체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인권단체들이 역학관계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운동계가 반성할 지점임.

< 토론1. 과거청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쟁에 들어가며 >

; 한국역사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임. 그동안 과거청산 운동의 실패요인은 과거청산 운동이 피해자 단체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투쟁의 고비에서 피해자들이 결정권을 행사했고, 개별분산 되어 있기 때문임.

과거청산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단체 연대조직인 '(가칭)공권력피해자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관련단체와 전문가그룹이 모여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를 재결성할 필요가 있음. 입법과정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과거청산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소주제토론8 ▶ 인권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문제

ILO조약으로 본 외국인노동자의 개념과 권리 그리고 국내 지원활동의 특징과 전망

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호칭들

(1) Migrant Worker와 Over Staier

- 1) ILO¹⁾는 각종 조약과 권고에서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입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이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란 일정한 지역에서의 생활근거지 이동이 아닌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이다.
- 2) 반면 한국과 일본처럼 연수나 훈련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체류기한 내의 합법체류자와 기간을 넘기거나 관광명목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취업중인 불법체류자로 구분될 뿐이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ILO의 조약과 권고에서는 불법이 주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 3)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말 속에는 은연중 사람 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체류 이외에 행해지는 노동도 불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내 이주노동자들도 모진 세월 속에서 스스로를 '불법사람'이라고 부르겠는가.
- 4) 한국의 이주노동자(상담)지원단체들은 이들을 통상 (외국인)이주노동자로 호칭하며, 정부가 불법체류자로 지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 받지 못한 노동자라는 의미에서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 workers)로 부르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편의상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로 호칭하도록 하겠다.

2.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ILO의 보호장치와 권리

(1)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사안

- 1) 한편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이주노동자를 '그 사람이 국적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언어, 문화, 사회적 관습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해당 이주노동자의 가족(아내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한다.

1) 국제협약 97호 : 현재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가장 규범적인 장치는 국제노동기구가 관여한 국제 협약 97이며, 이는 1949년에 채택되고 개정된 것으로 '고용을 위한 이주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고용을 목적으로 이주한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들과 사회, 의료, 금융 서비스에 관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권리 및 형사민사소송에서의 법적 구제조치 사용권도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협약 143호³⁾ :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이다. 현재 16개국만 비준했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일부의 궁핍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 저개발과 구조적 만성실업 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이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이전을 고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외국인력 송출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이주가 공공고용기관의 관장 혹은 쌍방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특히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협정에 따라 행해져야 함.
- 불법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불법을 막기 위한 특별히 고안된 기준이 필요
- 1958년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조약에 명시된 '차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법령에 의해 규제되거나 행정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어도 자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그 외에 권고사안으로 1949년에 개정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고 86호, 151호 등.

4)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들은 소수의 국가만 승인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는 보다 많은 국가들의 승인을 얻어내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다.

5) 국제노동기구의 또 다른 노력은 노동력 송출국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생산적(사업자금 및 생산에의 투자, 소규모 금융 창출 등)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송금액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에 20억 달러 미만이던 것이 현재는 730억 달러로 증가했다.

6) 한편 ILO조약과 권고 등은 해당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당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전제에서 각종 보호장치와

2) 협약 97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제외한 39개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3) 조약 143호는 불법이주를 다루고 있다. 즉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하에 불법의 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1) 취업을 위한 은밀한 이주 및 불법취업이주 금지 2) 불법적이고 은밀한 취업이주를 위하여 출발, 여행 및 입국행위 앞선과 불법이주자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법이주민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ILO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1) 기회 및 처우균등

-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를 받을 기회
- 그 지역 밖에서나 수입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고려하면서, 훈련이나 고용에 대한 개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제공받을 기회
- 개인적인 성격, 경험, 능력 및 근면도에 따른 승진
- 고용의 보장, 대체고용의 제공, 실업구제사업 및 재훈련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 노동시간, 휴식시간, 연차유급휴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사회보장조치, 고용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복지시설과 연금
- 노동조합원의 자격, 노동조합원의 행사, 기업내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관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기관에서 임원에 취임할 자격⁵⁾
- 주거, 사회서비스 및 교육보건 시설의 편익을 포함한 생활상태

2) 사회정책

2)-1 가족의 동거

- 가족의 동거를 가능한 한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 수입국(이하 수입국) 및 출신국 쌍방에 의해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를 위한 전제조건은 수입

4) ILO가 이주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경노동자,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의 입국, 해원, 훈련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등이다. 한편 이른바 불법이주에 대해 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좀더 포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엔협약도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협약에서는 공무수행 입국자, 취업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자, 외국인 투자자, 난민 및 무국적자, 학생 및 연수생, 주거와 유급활동종사가 허가되지 않은 선원 및 해상시설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로 보지 않아 국제협약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5) 하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 말만큼 쉽지 않다. 그것은 국경과 국적의 차이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방어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때문이다. 한편 인력수입국의 노동조합 혹은 개별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경쟁상대 혹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 송출국의 노동조합도 자국의 경제침체와 실업난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내기는 것도 쉽지 않아 많은 관심을 돌릴 수 없다. 보통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제적 규범들과 인권조약들을 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후자(정치적 권리)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간주하는 반면, 전자(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자국의 희생을 동반하며 지속시킬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 국민들에게 통상 적용되는 기준에 합치되는 적당한 숙박시설을 보유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배우자 및 피부양자인 자녀와 부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수입국에서 적어도 1년간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해당국에서 그 가족과 동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국내법과 국내관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기간중에 그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를 방문할 권리, 이주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을 하회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의 가족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2)-2 건강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자의 보호 및 사고의 방지에 관한 단체협약이 규정, 작업의 성질에 특유한 인건 규정과 안전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모국어나 가능한 경우에는 숙지하고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이주노동자가 작업에 대한 안전상 및 위생상의 위험에 관한 지시, 경고, 표시 및 기타의 표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을 회원국은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나 기타의 사람 혹은 단체가 그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 민사적 및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사회적 서비스

-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수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원조를 주는 것
-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통해 적당한 기관에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
- 교육과 직업훈련, 어학훈련, 보건서비스, 사회보장, 주택, 수송 및 여가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모국어 혹은 숙지하고 있는 언어로, 특히 법률구조 및 재판절차에 관하여 수입국에서 공공기관과 소통할 권리를 가능한 한 가져야 한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태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당국과 기관이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도록 원조하는 것
- 이주노동자에 관한 사회정책의 책정,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동료노동자, 작업반장 및 감독자에게 제공
- 위에 언급된 사회적 서비스를 위해 회원국은 전국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인 규모나

적당한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제활동부문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조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2)-4 고용과 주거

- 실업한 이주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하여, 최소한 실업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간에 상당하는 시간이 허용되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이에 따라 연장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고용의 종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국민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의 권리, 부당한 고용의 종료에 의한 임금이나 기타 지급급여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상태로 새로운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 직업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추방명령의 대상인 이주노동자는 국내법령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행정절차나 사법절차에 의하여 제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의 정당하게 실증된 요구에 따르는 한에서 이러한 제소는 추방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자국민인 노동자와 동등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와 통역에 의한 원조를 받을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 수입국을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체류의 합법/불법성에 관계없이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통상 지급되는 해고수당을 포함하여 수행한 노동에 대한 미지급금의 보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급여, 취득되었지만 행사되지 아니하는 휴가를 받을 권리를 대신하는 보상, 사회보장기부금의 반환(권리 인정 안될시에는 권리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 등

3.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권리

(1) 2002년 3월말 현재 외국인력 현황 : 336,800명 (법무부)

1) 합법체류노동자

- 연수취업자 : 10,394명
- 전문기술인력 : 20,564
- 산업기술 연수생 : 27,158명
-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 12,836명

2) 미등록노동자 : 265,848명

- 이 중 자진신고자 : 255,978명⁶⁾

(2) 국내 이주노동자의 신분과 지위

1) 법적인 지위와 신분

- 한국정부는 체류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합법체류자는 대부분 산업연수생을 가리키며,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는 연수생 이탈자, 밀입국, 관광목적으로 입국해서 취업하는 자 등 체류목적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자를 가리킨다.
- 이처럼 체류자로 구분되는 것은 국내에는 정식으로 허가된 (이주)노동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1년을 무사히 공부한 사람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2년간 E-6비자⁷⁾를 부여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다.
- 한편 국내에 취업중인 모든 노동자는 합법/불법을 떠나서 실제 노동을 수행하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수생은 훈련생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학생 취급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외 다른 사유로 입국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보다 더 광범위한 법적, 신분적 보장을 받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외국인력정책을 책임 있게 주관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한 송출국대사관들이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 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기청, 노동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다양한 부서가 외국인력정책에 관여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7월 19일에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의 사례처럼 행정부가 임의로 조정하여 파행을 조장하기도 한다.

2) 국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 산업기술연수생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 중 일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 예를 들면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연수수당의 정기지급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최저임금수준의 보장(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을 봄)', '산업안전보건의 확보(안전

6)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자진신고현황에 비추어본 수치이다. 실제로는 다수의 미신고자와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약 30만명 안팎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7) E-6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ILO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 입국'에 대해 관련 조약이나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에 관한 표시 게시 등에 대해 도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수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산재보상에 대한 설명, 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관련 보험법령에 의한 보험료 납부, 재해시 보험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 '의료보험의 혜택(연1회 건강검진 실시, 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의 설명, 사업주는 산업보건과의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 퇴직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기 68207-2147, 2001.7.3>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에 의해 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연수종료 후 취업체류 자격을 받아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며, 이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이 아닌 취업 체류자격으로 근로자의 취업한 기간으로 가지고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 미등록노동자 : 국내 노동자와 거의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거의 동일한 법적용이란 표현은 고용주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금은 이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거의 전사업장을 확대되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사업장이 다수여서 대부분이 공상합의 혹은 근로복지공단 진정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 한국의 의료보험서비스는 철저히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파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 고용주들은 질병으로 인한 1일 결근을 2일 결근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웬만한 질병에는 진통제나 감기약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료공제회 등 협력병원과 약국을 섭외하여 일정한 회비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한된 범위나마 제공하고 있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서비스는 인도주의적으로도 공적서비스가 절실한 부문이다.

4.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현황

(1) 이주노동자 지원 주체와 지원내용

1) 노동시민사회단체

-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지만, 독자적인 전문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주변적인 문제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문제 정도가 현실적인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전문상담지원단체만 해도 운영주체가 노동시민사회단체인 경우는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도이다.
- 주요한 지원내용으로는 노동인권상담(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내 폭행 등)과 의료지원(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지부활동, 의료진료 등), 교육프로그램(한국어, 컴퓨터교실), 생활상담(출입국, 송금, 국제결혼, 사망 등) 그리고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종교기관

- 국내 90% 이상의 지원단체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종교기관이 운영하지만 선교보다는 제도개선과 노동인권상담을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는 한편, 그외 개별적인 종교기관이나 개인은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 친목활동을 접목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정부유관기관

- 정부기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경찰 등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국법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합법/불법체류에 따른 이분법적인 지원 혹은 방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감독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명백한 노동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 후 사후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의미한 관심은 주목할 만 하다. 가장 적극적인 사례는 성동구청에서 세계선린회에 위탁운영중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이다. 수원시와 시흥시도 최근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 혹은 입안하는 등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귀국 후 해당 나라에 미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재고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지원내용도 기본적인 노동인권상담과 함께 한국

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홍보 하는 문화교류활동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민간 지원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의 특징

- 1) 제도개선과 사후조치 병행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 이주노동자 민간지원단체들은 근본적인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에 따른 합리적인 외국인력 운용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현재의 파행적⁹⁾인 외국인력정책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안(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사후조치에 노력하고 있다.¹⁰⁾
- 2) 극한 충돌 조율 창구 - 국내 이주노동자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이주노동자 민간 지원단체들의 활동은 국내외국인제도의 기형적인 파행에서 기인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해소하는 완충지역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함으로써 항상 잠재해 있는 극한 충돌을 사전에 조율/예방하는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노력만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시급이 요구된다.
- 3) 일방에서 쌍방으로 - 외국인력 도입 초기와 달리,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들간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적인 통로가 확대되고 있다. 모든 지원활동이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상호간 친목교류도 증대하는 추세이다.
- 4) 이주노동자와 사업주는 똑같은 정부 외국인력정책의 피해자 -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제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와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사업장의 구조적인 영세성과 1개월

8) 수원지역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이주노동자상담지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운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입장은 단순외국인력 수입금지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제도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을 연수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생 도입과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는 이주노동자문제는 연수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외국인으로부터 기인한다면 노동(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협이 연수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연수생 도입과 관리에서 비롯되는 금전적인 수익에서 기인한다는 설득력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중기청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연수생 관리명목으로 565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10) 말이 사후처리이지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에서 기인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뒤처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실무인력난(?)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의 경우 1인당 1달에 50-8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들 지원단체의 실무자들도 50-8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평균 50-100여건의 상담사례와 씨름을 하고 있다.

월급에 목을 거는 이주노동자 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쌍방이 모두 피해자¹¹⁾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쌍방이 정부의 파행적인 외국인력정책의 피해자임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쌍방간의 간격을 좁히려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90% 이상을 종교기관¹²⁾이 담당 - 비단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비슷하지만, 이주노동자 지원주체는 9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해당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심이 출발이었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 해도 십중팔구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 등 교계의 지원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주노동자 지원내용이 노동인권상담, 지역적인 차원의 생활공동체운동, 노동조합운동 등 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 사안에 따른 관심도에 따라 국내 노동사회시민단체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범위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취합하여 중장기적인 지원 방식과 내용 그리고 사안별 연대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

5.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망과 과제

(1)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관한 자문위원회

- 이제 이주노동자문제는 단순히 법과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바짝 다가온 생활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생활부분에서 국내인과 때로는 공존하며, 때로는 갈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논리만 보더라도 국내 3D업종을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존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서 법제도를 개선하지 않는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중앙

11) 가장 흔한 경우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체불하여 취업중인 이주노동자가 1인 혹은 다수가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해 원망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그나마 작동하던 생산라인이 중단되어 업체가 회복불능상태 혹은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2)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종교단체 101개, 일반단체 5개, 전문서비스단체(법률, 의료, 한글교육 등) 12개 등이 있다고 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 혹은 건의를 해야 한다.

- 또한 노동인권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상담사업은 물론이고 거꾸로 피해를 입은 국내인과 국내기업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사활동

- 과거 미국정부는 농업안정국(FSA)을 창설, 지원하여 소작인이나 소작농, 모래폭풍과 가뭄으로 인해 황폐된 대평원 지역의 여러 주로부터 피해 나온 이주민들의 문제와 영세농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바 있다. 약 7년간에 걸친 조사활동과 사진촬영활동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 하지만 국내 관련 부서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고작해야 실효성 없는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대략적인 이주노동자 체류현황을 뽑아내고 있을 뿐이다. 국내 어느지역도 자기 지역에 이주노동자의 정확한 체류과 취업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노동현실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자료도 거의 전무하다.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되,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각 지역에 체류취업중인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현실과 거주상태에 관한 실태 조사가 절실하다.

3) 이주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 이주노동자문제는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추가하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독특한 전문영역이다.
- 현재 국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제한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부분적인 관심에 머물고 있다. 전국 혹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바람직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해 나갈 종합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

1)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현재까지 상담지원단체는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중심적 역

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원단체들은 사실상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종합서비스(노동인권, 생활, 의료 등의 사회보장 서비스 등)를 제공하여 왔다.

- 지원단체들은 고된 일상속에서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내용이 세분화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인식과 활동력의 고양 등의 여건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과 친목교류 활동을 넘어서는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성은 지원단체 자체의 전문성은 일상활동을 안정된 속도와 실무력으로 뒷받침할 재정확보와 실무인력 양성과 교육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사회적 연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운동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노동상담 등의 일상활동까지도 포함하여 지원단체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렵다. 그것은 이주노동자 지원의 범주가 점차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가 담당 해야 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은 지원단체 자체의 전문성을 고양하는 것과 함께, 지원단체의 활동능력을 뛰어넘을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연대¹³⁾와 사안별 공동 대응 프로그램등의 개발과 사례 창출 노력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지원단체간의 연대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려 대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해당 지역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사회적 연대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6. 결론을 대신하며

(1) 이방인 혹은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크게 세가지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돈 벌러 온 가난한 나라의 이방인', '불쌍하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다'이며 두번째는 '일자리 뺏는 외국인¹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 범죄자', '노사관계를 교란할 수 있는 달

13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운영위원장 : 박희영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수원지역의 역량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모색하며 출발했다. 예를들면, 노동권문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문화서비스는 수원문화원, 여성과 아동문제는 수원YWCA와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엠마우스와는 지원활동의 공유와 공조, 고용문제는 수원상공회의소 등이다. 하지만 쉼터 상근 실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쉼터와 단체간의 지원활동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14) 가장 흔한 오해(?)중의 하나인데,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실업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 취업하고 있고 그 인원이 수십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주

갑지 않은 존재' 등이다. 세번째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관점이다.

-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는 곳곳에서 때로는 6개월 미만, 때로는 4-5년 이상 혹은 가족을 구성하여 영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며, 실천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입안과 확대로 풀어 나가야 한다.

(2) 지원단체, 공공기관, 노동시민사회단체간의 사회적 연대

- 이주노동자 문제는 일개인 혹은 일개 단체의 지원도 절실하지만,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별 지원단체의 전문성 고양과 함께 지역 사회구성원간의 의미있는 연대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출발점으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연수제도를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¹⁵⁾을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이와 별도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지역차원의 전문적인 논의나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쉽게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점차 분화되어 가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접목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자문역할 등의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참여, 문화생활, 각종 교육프로그램, 여성/아동/교육 문제, 환경문제, 취미생활 등을 함께하는 소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주노동자지원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바람직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해 나갈 이주노동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각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보를 교류하여 자기 지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정보 pool을 구성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국내 실업난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확실한 증거이다.

15)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이란 노동(고용)허가제이다. 사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며,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국내에서의 노동을 허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 이유는 외국인력정책의 시행은 어떤식으로든 고용과 노동이 동시에 허가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현재까지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해와 운동 적용 가능성 모색

김 미 선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사무국장)

1.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

1)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미발효)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

기존의 ILO조약의 정의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뿐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타국에서 국적취득 등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이민자나 정치적 난민과의 구별 지점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Primer on Migrant Workers' Rights(draft), 2000)

2) 이주노동자의 권리란?

이주노동자는 국제연합이나 기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인권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즉 인권은 기본적인,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분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천부적 권리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이러한 인권을 보장받는다.

이를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권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자 유 권	평 등 권	사 회 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에 의해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문화권

2. 이주민 협약의 이해

1) 이주민 협약의 탄생 배경

노동력의 수출은 외화획득, 실업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한 정책이 되어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 노동력들이 사람이라는, 인권의 차원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란 단지 사고파는 상품이요, 권리를 지닌 노동자 나아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이주민의 기본 인권은 너무도 쉽사리 침해당하거나 무시되어 왔다. 이는 시민, 난민,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학생 등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세계적 경제 악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은 기존의 이주민과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적대감과 거부로 바꾸어놓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권침해 등의 단어가 일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ILO 이주노동자 조약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미약한 점을 보완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의 국제적 기준을 옹호할 필요를 인식하여 이주민과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되었다.

2) 이주민 협약의 구성

이 협약은 전문과 9개 부문으로 나뉜 9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중 취

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였다.

3) 협약의 의의와 중요성

-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적 실체이며 따라서 가족재회를 포함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일하는 타국에서 비국적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리는 흔히 노동력 고용국이나 자신의 나라 국내법상 제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엔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협약은 최초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이주노동자 범주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밝혔다. 규약은 또한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특정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기준은 다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기본 인권 개념을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켰다. 등록노동자와 가족구성원의 기본인권으로 인식되는 부가적인 권리, 특히 고용국에서 그곳 시민들과 같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동등대우를 주장하고 있다.
- 이 국제 협약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불법 및 은밀한 이동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포함한 착취 방지와 근절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법상 이러한 기준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부분의 노동력 고용국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인권 원칙을 누려야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어느 나라든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본국에 돌아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생명권
- 고문이나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노예처럼 되지 않을 권리

- e)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러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 f) 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 g) 견해와 표현의 자유. 이 권리는 다른이들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국가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를 위해; 전쟁선동 방지를 위해;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증오로 일어나는 차별, 적대감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일 수 있다.
- h) 임의적인 사생활, 통신, 대화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i) 재산소유의 권리
- j) 임의로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을 권리
- k) 관리, 개인, 그룹이나 단체가 가하는 폭력, 신체적 상해,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l) 손해당하지 않을 권리
- m)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
- n)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를 지킬 권리

3. 국제인권규약의 의의와 한국 상황

1) 국제인권 규약의 의의

국제 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오랫동안 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므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인권의 보호라는 개념의 등장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할 국적국이 없는 경우에만 현지국의 재량에만 맡겨질 뿐이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노예제도의 금지, 소수 민족 보호, 난민 보호 등 제한된 분야에만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적용되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이들 인권 조항은 무엇보다도 인권 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유엔 회원국은 더 이상 인권문제를 과거와 같이 국내 관할 사항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유엔은 헌장상의 인권규정을 발판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각 회원국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권 기준에 관한 각종 선언과 포고령, 협약과 규약들은 각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원칙이며, 기본적인 기준이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기준을 재확인, 확대하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80여 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곱 개의 주요문서를 '비준과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UN인권선언'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헌장'이라고 불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조약',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어린이 권리 조약'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상의 핵심 7개 인권 규약 중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협약'만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참조)

주요 인권조약 한국비준 현황

조약명	체택일	발효일	한국비준일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1.3	1990.4.10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3.23	1990.4.10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966.12.16	1976.3.23	1990.4.10
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제 2 선택의정서	1989.12.15	1991.7.11	-
5. 학살 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48.12.9	1951.1.12	1950.10.14
6.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1951.7.28	1954.4.22	1992.12.3
7.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1.31	1967.10.4	1992.12.3
8.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9.28	1960.6.6	1978.8.22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5.12.21	1969.1.4	1978.8.8
10. 인종차별적 범죄 금지와 제재에 관한 협약	1973.11.30	1976.7.18	-
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	1979.12.18	1981.9.3	1984.12.17
12.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조약	1984.12.10	1987.6.26	1995.1.9
13. 운동경기상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약	1985.12.10	1988.4.3	-
14. 어린이 권리 조약	1989.11.20	1990.9.2	1991.11.20
1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	1990.12.18	미발효	-

출처 Human Rights International Instruments Chart of Ratification
 자료 : 국제 기구와 한국외교, 민음사, 1996에서 번역 재인용.

2) 비준절차와 국내 인권기준 제고에 미치는 효력

국제 협약은 입안 그룹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나 동의에 의한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국제연합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인 국제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채택된 '국제 문서'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비)서명, 비준, 가입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제 규범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비준국이 최소한의 숫자에 달해야 한다. 이 최소 숫자는 대개 조약 자체에 정해져 있는데, 본 조약은 20개 국가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조약의 비준, 가입국가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예비)서명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주로 각 국의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비)서명 단계에서 비준 단계로 넘어서는 과정에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의와 국내법과의 조율(국내법으로의 채택)이 필요한데, 관련된 입법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조약에 가입한다면 (예비)서명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다.

국제규범에 가입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의 국내법적 수용이라는 데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 협약은 그간 불분명하게 사용되어오던 이주민의 정의, 범주 등을 밝히고 있어 관련된 기타 인권개념을 보다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법과 사법권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4. 이주민 협약 비준 운동의 전개와 국내 상황 - 운동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1) 이주민협약 비준운동의 전개

1990년 최초로 이주민에 대한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협약은 최소 비준국수 20개국에 되지 못하여 국제인권규약으로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2년 11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모두 19개국으로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벨리즈 (Belize), 볼리비아 (Bolivi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ia & Herzegovina), 케이프 버드 (Cape Verde), 콜롬비아 (Colombia), 에콰도르 (Ecuador), 이집트 (Egypte), 가나 (Ghana), 기니아 (Guinea), 멕시코 (Mexico), 모로코 (Morocco), 필리핀 (Philippines), 세네갈 (Senegal), 시셀스 (Seychelles), 스리랑카 (Sri Lanka), 타지키스탄 (Tajikistan), 우간다 (Uganda), 우르과이 (Uruguay) 등이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회가 곧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하여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제법으로 효력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비준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대부분이 노동력 송출국이거나 이 협약의 구속력을 덜 받을 나라들이어서, 협약의 국제법적 효력발생 이후의 각국의 기

준수용과 실행 감시라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아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1997년 필리핀 단체들이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날로 선포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이것이 아시아 네트워크에 전달, 1998년부터 아시아 차원의 공동행사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즉 이주노동자 권리 인식 및 보호에 소극적인 아시아 각국 정부를 상대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문화행사, 기자회견, 국내 포럼 등이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면서 2000년 초 유엔주재 각국 대사관에 서한을 발송, 각국 정부가 이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할 것과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범 세계적인 캠페인 결과, 2000년 12월 4일 유엔은 마침내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선포하게 되었다.

2) 한국내 협약비준운동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에서는 1998년 명동성당에서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촉구 집회를 필두로 1999년 안산역, 2000년 탑골공원, 2001년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날 한국집회를 가져왔다. 여기에 이어 올해는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 주간으로 선포하고, 토론회, 사진전, 대중집회 등을 통해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국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형성하며 국제적 기준의 채택을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인 인권을 증진시켜내고자 한다.

끝으로, 최근 국내에서 전개된 이주민협약 비준운동의 의의를 정리해보며, 향후 과제를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 a) 무엇보다 협약비준운동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려 애썼으며,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었다.
- b) 국제연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공동성명 및 국제적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가 일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며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c) 협약비준운동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의 필요에 대한 논리를 강화할 수 있었다.
- d) 이주노동자를 희생자로서만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축제의 날로 또한 투쟁의 장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단체들과의 접점확대 필요, 대중 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배포,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한 협약비준과 실행 및 감시를 위한 세미나와 기타 훈련 프로그램 조직,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할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및 자료 공급 등이 후속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끝)

■ 소주제토론8 정리

인권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정리 : 신 수 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부장)

1. 참가자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수원외국인노동자 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동건강복지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2. 토론회 개요 및 순서

2.1 일시 : 2002년 11월 30일 오후 9시30분~11시

2.2 토론회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새사회연대

2.3 주제발제 및 토론

1) 발제 1.

- ILO 조약으로 본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사회권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사무국장

2) 토론문

-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복잡성 : 신수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부장

3) 토론

4) 발제 2.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사무국장

5) 토론

3. 토론내용 (*논의주제별 정리임)

*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참가한 단체들이 관련 현안 및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 중에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이의 실천을 위한 과제나 방법들에 대한 모색하기 위한 단상들이 오갔습니다. 아래 정리는 질문내용을 대답과 함께 정리하였으며,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은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중기협 의 논리 및 논쟁에 관하여

중기협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통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외국인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체류상의 불법으로 인하여 정부의 단속이 있을 경우에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안정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 불안정하여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반기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중기협의 논리 배면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이 주어지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 조차도 실시를 하지말아야 하는 논리 등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식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 회원은 광주지역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려 사업주측에 관련사안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한국사회에 대해 좀더 접하게 되면 사업장 내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등을 모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음. 우리 나라에서 사업주들이 인도주의적인 차원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에 대한 모색도 필요한 것 같음.

3) 외국인이주노동자들 관련 사업에 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의 일상사업들을 상담소 등에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단체에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가 되어야 할 측면도 있는 것 같음.

4) 국제협약의 기준 및 이의 국내준수를 위한 협약운동 등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ILO 협약이나 모든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비준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기준이 현실에서는 요원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국제비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현 상황에 대한 견해나 이에 대한 실천의 과제나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가?

그리고 1998년부터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외노협에서 국민들에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알려내고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좋았던 시도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면서 정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차

별반대 서명운동 등이 있기는 했지만 12월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를 운동으로서 전체 운동의 과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2-3개월에 한번씩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전환 및 시도들이 중요하다.

5)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의 집중적인 투쟁방식이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인권운동에서 한달에 한번씩 등으로 전체 집중해서 함께 투쟁하고 해결하고 또다른 사안으로 모여서 실천하고 해결하는 방식 등 같이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의 사회적인 실천을 위해 1990년대말에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출국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담단체 대표들이 구속되기도 하여 이의 공대위가 결성되어 활동한 적이 있으며, 2000년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법제정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있었으며, 최근 2002년 9월에는 정부의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출국에 대해 반대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결성되었다. 이에 관련현안에 대해 공대위를 통해 활동을 넓혀나가고 하고 있으며, 공대위 활동에 대해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상담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현안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대와 모색의 자세는 필요하다.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과정

[문서1] '(가칭) 2002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1차 준비모임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후 2시,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 : 손상열(평화인권연대), 박진(다산인권센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이은규(천주교청주주교평위), 이창조(사랑방), 이진원(새사회연대),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조혜은(불교인권위), 김철효(앰네스티)

<논의 및 결정사항>

1) 활동가대회의 목표

- 인권단체의 교류와 연대
- 인권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 평가
-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

* 논의지점 : 인권단체 간의 교류와 정보공유에 의의를 둘 것인가? 다른 성과지점을 목표로 할 것인가? 에 대해, 단순 교류와 정보소통을 넘어 인권단체의 구체적 연대전망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음.

2) 시기와 일정, 장소, 예산

- 시기 : 11월 30일-12월 1일(토-일) 1박2일간
- 장소 : 충청권 내 장소(섭외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일정 : 첫날 - 대주제토론→모둠토론→평가/소주제토론→평가. 이후 문화공연 및 뒷풀이
둘째날 오전 - 초청강연
둘째날 점심 먹고 해산
- 경비 : 참가자 개인당 2만원 + 단체 협찬 (재정안 마련 - 인권실천시민연대)

3) 활동가대회 내용

① 대주제토론(전체참가)

* 주제 : '지난 10년 인권단체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연대의 전망과 대안'

* 논의지점 : 인권단체 연대운동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한가의 여부 → 과거활동에 대한 평가와 일반적 전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 제출이 있어야 생산적 논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합의.

② 소주제토론 : 참가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차기 모임에서 의제 결정.

③ 강연 :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 제안취지 : 인권단체들의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고, 향후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활동 및 운영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논의지점 : 강연자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의 문제에 이견 → 김창국 위원장을 초청하느냐, 박노현 위원을 초청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의견일치 못 봄. → 2차 모임에서 재론기로 함.

4) 2차 모임 일정 및 안건

- 일시 : 10월 25일(금) 오전
- 장소 : 수원/청주/대전 가운데 택일(추후 공지)
- 안건 : ① 대주제토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논점 정리
② 소주제토론 의제 선정(10/24일까지 참가단체 의견수렴. 별도의 소주제토론 기획안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준비)
③ 활동가대회 장소 확인 및 재정계획 논의

[이메일 의견1]

<10/17> 국제앰네스티

장소와 경비에 관한 저희 의견입니다. 저희 앰네스티에서 자주 쓰는 대정 유성유스호스텔을 알아본 결과, 현재 11/30-12/1 예약 가능합니다. 1인당 비용은 1박 7,000원, 1식 4,000원입니다. 1박 3식으로 계산하면 19,000원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거기서 행사해 온 관례로 보면, 기본 숙식 19,000 + 자료, 행사진행 관련 5,000 으로 1인당 24,000원 정도에 해결했으며, 뒷풀이 술값은 그자리에서 각자 되는대로 부담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때 돈줘야 하는 가수를 부르거나, 강연 때 큰 돈을 줘야 하는 강사를 부르지는 않는다면, 술값을 포함해도 행사비 1인당 30,0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술값을 1인당 맥주2병에 새우깡 1봉지로 하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 더 마실려면 그건 각자 부담하면 되겠지요)

장소를 예약하려면 빨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2] 앰네스티 제안문 (10월 24일)

수신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 모임

제목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프로그램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의견

I. 전국인권활동가대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제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전국인권활동가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국내 인권단체들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도모를 통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 단체의 상이한 조건과 활동 내용, 활동 대상, 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각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고, 단체 간의 수평적 민주성을 통한 '서로 이해하기'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대의 틀이 생성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소수의 단체들이 논의되어야 할 의제들을 결정하여, 초청된 전국의 단체들은 참가하여 '배워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참가한 각 단체들이 동등하게 자기 단체의 관심사와 활동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타 단체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체들이 수평적이고 자발적으로 연대의 틀을 구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가 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회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참가한 모든 단체와 참가자들이 단체와 활동가로서 개인의 관심사, 활동 내용, 대상, 방식 등을 타 단체에게 충분히 알리고, 단체가 주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거기에 대해 다른 단체 참가들과 쌍방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예를 들어 2분 발언대)을 제안한다.

이러한 각 단체간 가장 기초적인 소통의 문제를 단순히 '술자리를 통한 친목도모'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II. 계획되어 있는 소주제토론의 의제에 관한 제안

1.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사형제도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사법제도이다.
- 현재 전세계 111개국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사형존치국이다.
- 김대중정부는 5년간 한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등 사형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사형폐지운동은 일부 단체의 활동에만 그치고 큰 연대의 틀을 만들지 못하였다.
- 현재 정권말기라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인권단체 내에서의 인식확산이 요구된다.

2.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인권단체 연대: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한국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어린이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인권협약에 비준하여 이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에의 비준이 시급히 요구된다.
- 한국정부의 국제인권협약 비준촉구 운동과 비준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감시 등의 활동은 인권보호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사회권위원회 등 일부 국제인권협약에 관련하여 이미 단체들의 연대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와 활동의 지속성 보장이 요구된다.

3. 각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문제에 관련한 토론

- 국내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재정문제와 투명한 회계의 문제이다.
- 이 문제에 관련하여 단체간에 공식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특히 인권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면제 등 정부를 대상으로 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문서 3] '(가칭)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2차 준비모임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수원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참석 : 송원찬(다산), 손상열(평화인권연대), 박종익(동성애자인권연대), 박수진(한국동성애자연합),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최재훈(국제민주연대)

○ 안 건

1. 참여단체 소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제안
2. 전체 토론 내용 및 발제자 선정
3. 소주제 토론 의제선정
4. 초청강연 여부
5. 장소 및 재정
6. 기타

○ 논의결과 (*행사 기획안 별첨)

1. 국제앰네스티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화한다.

- 1-1. 활동가대회 자료집에 각 단체 활동내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참여단체들에게 각각 소개글(A4 용지 1장 정도의 분량)을 요청한다.
- 1-2. 매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단체 소개 시간을 갖는다.(세 차례로 나눠 소개 시간을 가짐. 한 번에 모든 단체를 소개하는 것은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지루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
- 1-3. 대회장에 각 단체 리플렛과 단체별 자료집을 전시한다.

2. 전체토론 - 주제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 2-1. 활동가대회가 인권단체들의 연대를 취지로 하는 만큼, '연대운동' 측면에서의 평가와 과제를 주내용으로 발제.
- 2-2. 진행방식 : 기초발제→플로어토론→논점정리(사회자)→분임토론→총화
- 2-3. 발제자 : 조효제(성공회대), 김녕(서강대) 교수 등을 1차 섭외대상으로 함.

* 활동가에게 발제를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경우 특정 단체의 입장이 강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활동가들의 의견은 플로어토론과 분임토론을 통해 발현할 수 있으며, 기초발제는 제3자적 위치에 서 있는 무난한 인물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따라, 인권 운동의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온 학자 가운데 발제자를 섭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단, 연대운동 평가에 있어, '비엔나인권대회공동대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 과거 인권단체들의 연대 경험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발제에 포함되도록 발제자에게 요청하기로 함.

2-4. 사회자 : 미정

3. 소주제토론 의제선정 논의

<제안된 의제>

-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인권단체 연대 :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각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문제에 관련한 토론
- 인권교육의 방향과 전략
-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에 대한 토론
- 사회권운동의 전략
-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에 대한 토론
-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토론
-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군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이상, 제안된 의제 외에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20-30개 정도의 의제를 모은 뒤, 3차 준비모임에서 최종 7개 안팎으로(참여인원이 70명 정도일 경우) 의제를 추리기로 함. 3차 준비모임에 앞서, 각 단체별로 3개씩 참여하고 싶은 의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고, 각 단체의 선택을 존중해서 의제를 선정키로 함. 가급적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와 연대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제를 선정할 예정. 3차 모임에서 의제가 선정되면, 각 주제별 준비팀을 구성하게 됨.

4. 초청강연, 폐회행사

- 4-1.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문제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상범 의문사 위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대안도 제출했으나, 초청강연은 갖지 않기로 최종 결정.
 - 4-2. 폐회행사 : 소주제토론의 논의내용을 총화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활동가대회 결의문' 혹은 '선언문'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기로 함.
- * 결의문(혹은 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3차 준비모임에서 진행하기로 함.

5. 장소 및 재정

- 5-1. 장소 : 강원도 영월 예림교육원(섭외-인권실천시민연대. 교통편은 추후 공지)
* 대전유성유스호스텔도 제안됐으나, 그곳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주변 자연환경이 매우 좋다는 점이 고려돼 예림교육원으로 결정 내림.
- 5-2. 재정 : 개인당 참가비 2만원. 부족한 부분은 각 단체에서 일정하게 후원하는 것으로 함. (세부적인 재정안 마련 및 실무는 인권실천시민연대에 일임)

6. 기 타

- 6-1. 참가대상 : 참여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 일반인(예컨대, 기자·학생 등)에게도 행사를 개방하는 것으로 함. 단, 일반 참여자 참가비는 3만원 수준으로 함.
- 6-2. 참여단체 확인 : 3차 모임 전까지 활동가대회 참여단체 및 인원을 잠정 파악하기로 함.

○ 3차 준비모임

- 때 : 11월 6일(수) 오후 1시
- 곳 :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 안건 : 1. 소주제토론 의제 선정 2. 활동가대회 결의문(혹은 선언문) 내용 논의
- 3. 전체토론 발제자/장소 점검 4. 전체토론 사회자 결정
- 5. 자료집 제작/현장진행/뒷풀이준비 실무분담 등

[이메일 의견 2]

<10/28> 앰네스티 의견

첫번째, 장소와 관련하여, '전국인권활동가대회'의 장소는 '전국'의 활동가들의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된 '강원도 영월'은 지방의 인권활동가와 단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아가는 소요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약 2시간,

대구에서 자가용으로 약 4시간 버스로 대전을 경유하여 갈 때 약 5시간 30분

부산에서 자가용으로 약 5시간 30분 버스로 대전을 경유하여 갈때는 약 7시간

광주에서 자가용으로 약 4시간 버스로 대전을 경유하여 갈때는 약 5시간 30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활동가들의 경우 상당한 불편과 시간낭비, 교통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는 '강원도 영월'로 장소를 결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장소는 '중부권'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대전'에 적절한 가격의 장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결의문(선언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상 '결의문'을 채택하는 시간만 배정되어 있을뿐 결의문을 준비하는 시간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부 단체들간에 큰 폭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예정된 2시간) 동안 많은 참가단체의 동의에 기반한 결의문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결의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된다면 이는 단체간 이견을 재확인하는 이상의 결과를 거두기 힘들리라 예상됩니다. 혹은 일부 단체들이 주도로 대다수 단체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만일 구체적인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는 결의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원칙만 반복하는 선언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동의가 쉽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만들어진들 유의미한 작업은 안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반대합니다.

<10/28> 박통 씨 의견

인사 드리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듯 하여..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동성애자연합>의 박통이라고 합니다.(박통은 박정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

우선, 기획안 작성해 주신 창조리님께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 및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발제 형식 변경건

; 인권운동사랑방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프상에서의 논의가 한번쯤 다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소주제 주제 제안

; 최근 검열과 관련한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적소수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번 활동가대회 논의자리에서 반드시 논의해보았으면 한다는 제안 드립니다.

3. 장소 관련.

엠네스티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기획안 및 홍보 관련

<한동연>에서 여성단체 및 성적소수자단체 홍보 작업을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기초적인 기획안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완성된 기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발제 및 장소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단위 확보를 위한 기초 기획안을 완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홍보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발제 형식과 장소는 결정되는 대로 차후에 홍보하기로 하고, 기초 홍보문안은 일단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0/29> 국제민주연대 최재훈씨 의견

먼저 대주제 토론 발제자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난 수원에서의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운동에 관한 평가와 전망은 기본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운동에 함께 참여해온 관련 연구자의 발제도 일선활동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스스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발제를 토대로 그것을 보완하고 조언하는 보조발제라면 몰라도 학자의 발제가 주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소 투박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좀더 활발하고 현장에 다가서는 토론을 위해서는 활동가가 발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방이 제안한 방식, 사전에 발제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공동발제하는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단, 이 경우 발제의 내용들이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만 짚을 수 있고, 내용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공동발제를 7분씩 세명 정도하고(25분 정도 소요), 학자 한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보조발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고 한사람이 전체 발제를 한다면, 저희들은 인권운동연구소의 박래균 연구원을 추천합니다.(아직 의문사진상규명위에 계신가요?)

장소 문제는 2차회의에서 지방단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단지 중앙고속도로를 너무 믿은게 잘못이었죠. 일단 장소는 문제제기가 들어온 이상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최재훈

<10/29> 다산 송원찬 씨 의견

동의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여러의견들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자꾸 논의된 사항이 번복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준비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준비팀의 기능과 역할이 애매해지고....

아무튼 이창조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시급히 시행했으면 합니다.

[문서 4]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3차 준비모임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02년 11월 6일(수) 오후 2시/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

○참석 : 평화인권연대(손상열), 동성애자인권연대(박종익), 한국동성애자연합(김병석), 인권실천시민연대(오창익), 인권운동사랑방(이창조), 국제민주연대(최재훈), 천주교인권위(안주리), 새사회연대(이진원), 다산(결정 위임)

○ 논의결과

1. 논의정리 방식

- 활동가대회의 준비과정은 '준비모임 참여단체'에 위임된 것으로 이해한다.
- 회의결과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준비모임 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 사항으로 확정한다.

- 회의 미참 단체의 수정의견이 있을 시, 논의사항을 재론한다.

2. 장소 및 대회 명칭

- 대전(앰네스티에 장소준비 위임)
-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3. 전체토론

- 원안(2차모임 결과)이었던 '학자에게 주발제를 맡긴다'는 안을 폐기하고, 원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 발표시간을 배정하기로 함. 단, 발표단체의 숫자가 확정되는 대로 시간 배정.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운동을 중심으로'를 기본주제로 하되, 연대활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개진을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의 연대운동 경험에 기초한 발표도 권장하기로 함.
- 발표신청 접수는 11월 19일(화)까지 마감. 발표자 원고제출은 11월 26일(화)까지 마감. 발표신청 시 '발표주제 개요'와 '발제자명'을 통지해줄 것 요청.

4. 소주제토론

- 제안된 의제에 대해 모두 토론을 조직하는 것으로 하되, 11월 19일까지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조정. 의제에 관한 추가제안이 있을 시, 제안단체에게 토론기획 및 조직을 요청하기로 함.
- 준비방식 : 준비모임 참여단체들이 의제를 분담해, '기획-발제-조직-홍보' 등의 문제를 관련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조정. 자료집 수록을 위해 발제문 원고를 11월 26일까지 제출.

<제안된 의제> 단체명은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 굵은 글씨는 '코디' 단체

-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천주교인권위/앰네스티
-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인권단체 연대 :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앰네스티
- 각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문제에 관련한 토론 - 앰네스티
- 인권교육의 전략 - 다산/동인연/평화인권연대/사랑방
- 사회권운동의 전략 - 사랑방/다산/평화인권연대
- 운동사회의 기부장성 문제에 대한 토론 - 한동연/동인연/평화인권연대
-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 사랑방/한동연
-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토론 - 인권실천시민연대
-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형사소송절차와 인권) - 인권실천시민연대/다산
- 군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 천주교인권위

- 인터넷 검열에 대한 대응 - 한동연/동인연
-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에 대한 토론 - 참여단체 없음
-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 참여단체 없음

5. 결의문 채택

- 전체적인 결의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함.
- 사안별 결의안(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결의안')을 각 단체가 준비해 오고, 그것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결의안 채택은 하기로 함.

6. 참여신청 접수

- 현재 연락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들이 각 단체들에게 참여요청 공문과 개인참가신청서를 발송한 뒤, 해당 단체들로부터 신청서 접수 → 전체 참가신청자 총화는 '한동연'에서 담당.
- 개인참가신청양식은 '평화인권연대'에서 만들어 배포기로 함.

7. 실무점검

- 실무분담기획안을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작성한 뒤, 차기 회의에서 역할분담.

8. 4차 준비모임

-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천주교인권위 회의실
- 논의안건 : 참여단체 중간점검 및 소주제토론 준비상황 점검. 실무분담 등

[이메일 의견 3]

<11/7> 앰네스티

어제 알려드렸던 '공주유스호스텔'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장소로 사용할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대전 시내의 장소들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라서 대전 시외로 장소를 알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십여군데를 알아보았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첫번째 조치원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조치원으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에 필요한 선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조치원청소년수련원

교통편, 비용 등이 가장 좋습니다. 조치원역에서 택시로 5분. 1박 3식 21,000원 추가비용 없음

<http://www.jochiwoncamp.com/index.html>

2. 화양청소년수련원

대전->화양->수련원 1박3식 24,000원 <http://www.hysw.co.kr/index.htm>

3. 금산일월유스호텔

대전->금산->수련원 1박3식 24,000원 <http://www.ilwolyh.com/>

[문서 5] '2002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4차 준비모임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2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천주교 인권위원회

○ 참석 : 국제민주연대(최재훈), 동성애자인권연대(정율), 새사회연대(이진원), 인권실천시민연대(신치호), 인권운동사랑방(이창조), 천주교인권위원회(김안드레아), 평화인권연대(손상열)

1. 장 소

○ 조치원 유스호텔로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회의까지 인권실천시민연대(신치호)씨께서 장소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단체참여현황 및 참여단체 조직

○ 현재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참가자 현황: 동인련(3명+ a), 새사회연대(5+ a), 인권실천시민연대(10명 가량), 인권운동사랑방(10명 가량), 천주교 인권위원회(과악안됨), 다산인권센터(6+ a), 평화인권연대(5+ a), 국제민주연대(3~6)

○ 참가의사를 밝혀준 단체들: 민변(2~3), 민주법현, 건약(1) 민우회, WAW, 장애공감 등
※ 참여단체조직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회의까지 각 단체별로 분담된 연락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요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문은 새로 정리된 행사안내문과 참가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안내문은 행사내용, 회비입금계좌, 장소 및 교통편을 추가하여 사랑방(이창조)이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 단체 참여조직시 ① 참가여부확인 ② 전체토론 발표여부확인(서면발제를 전제로) ③ 소주제토론 참여여부확인 ④ 신청서작성 및 발송안내 ⑤ 자료집에 들어갈 단체소개서 작성부탁(A41장)

을 반드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참가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한동연(신청서 맨위에 이메일주소와 팩스번호가 있습니다)으로 총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신청은 가능한대로 11월 25일까지 총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정 검토

○ 수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① 단체소속 참가자 1인당 2만원(80명 참여시 1,600,000원) ② 단체후원금: 단체별로 형편껏 후원금 납부(대략 100만원 조달) ③ 일반참가자 1인당 3만원 ④ 개인후원금

○ 지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소사용료(2,500,000원) ② 자료집제작(400,000원) ③ 뒤풀이비용(500,000원) ④ 현수막제작(60,000원) ⑤ 명찰(30,000원) ⑥ 진행비(400,000원) ⑦ 기념품(볼펜) ...

※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신치호씨께서 회계를 맡아 단체후원금과 개인후원금을 열심히 조직하시기로 하셨습니다.

4. 실무분담

○ 자료집 원고 독촉, 편집, 인쇄, 운송 : 동인련 담당(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회의(11월 19일)때까지 전체토론 및 소주제의 발제자 윤곽을 잡기로 했습니다.)

○ 총무 및 진행 : 총무 및 진행팀을 국제민주연대 다산, 인권실천시민연대, 평화인권연대에서 담당하고, 진행총괄 및 전체사회는 최재훈씨(국제민주연대)가 하기로 했습니다.

○ 언론 보도자료 발송 및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 행사안내 : 새사회연대

cf. 국가인권위 참가요청 여부에 대한 논의 - 참가요청 혹은 행사안내 공문은 보내지 않고 게시판에 행사안내문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공문요청 혹은 문의가 있을 시 관련 문제에 대해 재론할 예정입니다.

○ 참가단체 조직문제는 위 2번 팀에서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5. 소주제토론 준비현황 점검

○ 소주제토론 준비가 대부분 이제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다음회의(11월 19일)때 확정지을 수 있도록 각 소주제토론 준비자들이 기획안을 써오도록 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코디 및 준비단체들은 다음회의까지 준비작업에 열중해 논의된 기획안을 준비해주시시오

○ 소주제 토론별로 현재 파악된 상황만 정리해보자면,

①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에 관한 토론 발제자는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로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② 국가인권위 대응문제에 대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제안

국가인권위 논쟁에 대한 별도 자료집 제작(곽노현, 오창익, 이창조, 이창수, 조용환의 글 포함) 가능하다면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쟁을 제공했던 인사들이 참여하여 발제하고 질의, 토론,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 단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 ③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토론에 대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제안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에 대해 1인의 발제자가 발제하고, 자유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인권 단체들의 협력가능성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cf. 인권활동가 양성 및 재정문제가 모든 인권단체들에 공통적인 문제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른 소주제토론과 별도로 시간을 배치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다음 회의 시 전체 행사일정을 정리할 때 재론하기로 했습니다

- ④ 수사기관과 인권에 대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제안
1,2인 발제후 자유토론: 청주정평(이윤규), 인권실천시민연대(김희수, 오창익, 고상만), 다산(송원찬)등에서 발제자를 모색할 예정

이외에 국제민주연대에서 '평화이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대응'이라는 소주제토론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문서6]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5차 준비모임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 화요일 /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석 : 다산인권센터(박진), 동성애자인권연대(박종익), 새사회연대(이진원),
인권실천시민연대(신치호), 인권운동사랑방(이창조), 한국동성애자연합(김병석)

1. 장소 관련

- ①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섭외를 담당하셨고 아직 답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후 검토해 보고 필요할 경우 답사를 다녀오신 답니다.

2. 단체 참여 현황 관련

- ① 건약 참여 취소 - 새사회연대에서 독려를 담당하던 건약에서는 건약의 활동에 버금가는 토론거리(표현의자유, 문화 관련 등)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할 것 같고, 활동가도 부족한 실정에 무리하게 가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참여를 취소했습니다.
② 외노(3~5명),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3~5명) 참여 - "이주노동자와 인권"이란 주제와

"과거청산과 인권"이란 주제로 소토론회를 제안했으며, 이 주제로 소토론회를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함.

- ③ 준비 모임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참가독려단체 이번 주 중으로 총화해서 한동연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참가 신청 마감 - 25일

3. 전체 토론 관련

- ① 발표 참여단체의 파악이 시급합니다.
② 26일 원고마감 - 참여단체의 발표 내용을 담은 원고는 26일까지 동인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 시간은 단체당 10분 정도
④ 발표 참여단체(섭외 담당 : 다산인권센터) - 다산에서 각 단체에 연락해서 전체토론에서 발표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권운동사랑방 단독 발표로 진행 될 것입니다.
⑤ 사회자 (섭외 담당 : 인권실천시민연대) - 섭외 대상 1.오완호(앰네스티) 2. 최완욱 3.함필규(NCC)

4. 소주제 토론 관련

- ①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위 대응 전략" 과 "사회권" 주제 토론에 대한 기안을 마감해 주셨습니다.
② "인권위 대응 전략" - 인권위에 대한 이해에 치우치다 보면 교양 수준의 토론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기초로 정함.
③ "사회권" - 각 단체가 사회권 운동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
④ "인권교육" - 브레인 스토밍 형식으로 진행.
⑤ 소주제 토론을 진행을 담당하신 단체에서는 내용(기안)을 작성하셔서 21일 목요일까지 동인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목요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토론 주제는 배제된 채로 진행 될 것입니다.
⑥ 21일(목) 기안 접수 -> 편집 -> 22일(금) 오전중 각 단체에 배포 -> 각단체는 독려단체에 배포
⑦ 토론 시간 조정 - 참가 인권과 토론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⑧ part 1, part 2 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참가 단체와 인원이 파악되면 part 1, part 2 어느 곳에 위치 시킬 것인지 정하기로 함.

5. 대회 공문 재발송

- ① 22일 동인련에서 21일까지 모인 소주제 토론 기안을 정리해서 각 단체에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소주제토론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재차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6. 자료집

- ① **각단체 소개서** - 각단체의 연혁 및 활동사항에 대한 단체 소개서를 A4 한 두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동인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 26일**

7. 보도자료

- ① 다음 회의에 새사회연대에서 초안을 가져와서 공유 한 뒤에 활동가 대회 1~2일 전에 배포

8. 재정

- ①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이번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활동가 대회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 일시장소 : 11월 26일 화요일 4시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이번 회의에는 기존 준비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분들이 꼭 빠짐없이 참석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것은 알지만 가급적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의견 4]

안녕하세요 동인련입니다.

지난 6차 회의 내용이 전달이 안되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가 대회 시작전에는 자료집이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수집이 안 되었고, 대회가 끝난 뒤에 좀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가 대회에는 일단 행사안내 및 일정소개를 해주는 리플렛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뒤에 자료를 종합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체토론이나 소주제토론을 기획하고 있는 각단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토론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단체에서는 발표내용을 약 150부 정도 복사해서 당일 배포하는 것으로 하구요.

소주제 토론을 코디하고 계신 단체에서는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약 50부 정도 복사해서 소주제 토론시 배포하고 일부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알려 드려 죄송하구요.

현재 행사일정안내 리플렛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

[문서기]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6차 준비모임 회의록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화요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석: 국제민주연대(최재훈), 다산인권센터(박진), 동성애자인권연대(박종익),

새사회연대(이진원), 인권실천시민연대(신치호, 김지영), 인권운동사랑방(이창조),

평화인권연대(손상열)

1. 참가자 접수현황 보고

총 26개 단체 125명으로 집계(11/26일자)

- ①한동연의 결석으로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나 일정상, 11/28일까지는 수련원에 정확한 인원을 알려야 하기에 결석의 의해 총 130명으로 조정하여 고지하기로 함.
- ②식사의 경우 폐회식날 점심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하면 비용에서 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볼것(담당:인권연대 신치호)

2. 전체토론 논의

①사회자: 오완호(엠네스티 사무국장)

②발제자: 인권운동 사랑방

③현재는 발제자가 인권운동 사랑방 단독인데 서면발제는 어려워도 의견을 풍부하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준비모임주체가 주축이 되어 5-10분정도의 의견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내용은 인권단체 공대위, 연대회의 등의 연대기구의 필요성, 성과, 문제는 무엇이였는가등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⑤가능하면 새사회 연대도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새사회연대는 늦어도 27일까지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소주제 토론

- ①최종적으로 8개의 분야별 주제로 확정.
- ②참가신청자별 소주제 토론인원 확인(장소 배정)
- ③없어진 주제를 선택하신 분은 다른 주제로 안내
- ④이후 추가되는 주제는 1교시에 넣도록 할 것.
- ⑤민언련은 소주제토론을 포함하여 행사참여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오셨습니다.

4.재정문제

- ①기념품 작(머그컵)의뢰를 했습니다.(총 150개 제작)
- ②기타 자료집/뒤풀이비용/현수막제작/명찰등의 제작이 예정대로 지출될 경우 850,000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③기념품은 취소가능한지 확인하고, 명찰은 각단체 보유분으로 처리하고 현수막은 예정대로 제작하되 실무담당은 국제민주연대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 ④예상적자는 준비단위에서 분담(기본 5만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단체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행사관련 세부사항 논의

1교시	인권교육의 전략	국가인권위 대응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수사기관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과거 청산
2교시			사회권운동의 전략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①방배정, 행사별 인원배정
-한동연/동인연/인권연대가 행사전에 논의해서 결정.
- ②공문수정(담당:동성애자인권연대)
- ③ 차량배치
-수련원에 연락해서 차량지원가능여부확인후 불가능할 경우 필요차량수배해서 배치

④연락처 안내

-준비진행팀(총무진행팀소속 4개단체에서 각 연락처하나씩 준비하고, 수련원 자체 연락처 1개를 사용해서 총 5개 연락처를 공지)

⑤단체소개

-단체소개는 전체토론 중간을 이용하여 1회를 더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하되 사회자가 행사 중간 중간에 틈틈이 3-4개 단체의 소개를 한다.

⑥행사진행 시물레이션

- 상황실장:인권실천시민연대 신치호
- 전체 진행사회(뒤풀이 진행포함):국제민주연대 최재훈
- 행사 첫날

⑦준비주체는 행사장소에 12시 집결

⑧부스 및 PC설치

⑨방 확인

⑩접수대 설치(필요인원 3명):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평화인권연대 각 1명 지원

⑪진행상황을 상황실장과 전체진행 사회자에게 알림

⑫참여단체 소개(국제민주연대 최재훈)

⑬휴식

⑭전체토론

⑮분임토론 및 방배정

⑯소주제 토론(총 8개 팀으로 나눔)

:내용정리,토론사회등은 현장에서 분임토론팀에게 일임

:분임토론팀장이 정해지면 표를 제작해서 전체 사회자인 최재훈씨에게 전달.

[공문 - 참가요청]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1. 제안취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인권운동이라 함은 양심수나 고문, 의문사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운동, 종교인권단체를 비롯한 소수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다양한 부문으로 운동이 분화하는 한편, 새로운 인권개념과 의제들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인권운동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고,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간의 연대를 실천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흐지부지되거나, 인권단체들 간에 아픈 상처를 남긴 채 해소되는 등, 많은 굴절을 겪어 왔다.

현재 특정 사안별로 인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목 적

- 인권단체의 교류와 연대
- 인권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 평가
-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

3. 행사개요

- 날 짜 : 2002. 11. 30(토)~12. 1(일) 1박2일간
- 장 소 : 조치원 청소년수련원(홈페이지: www.jochiwoncamp.com/전화: 041-862-3332)
- 찾아오시는 길 :
조치원역에서(차로5분거리) 의당.봉암리 방면으로 진입. 동원사단에서 2Km에 위치
(홈페이지에서 오시는 길 참조)
 - 셔틀버스 운행 : 11월 30일 토요일 13:00-14:30
20분 간격으로 조치원역에서 대회 행사장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 내 용 :

(1) 전체토론

- ▶ 주 제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 ▶ 방 식 : 1. 각 단체별 의견 발표(발표를 원하는 모든 단체 - 사전 원고제출)
 - 2. 자유토론
 - 3. 사회자의 논점 정리
 - 4. 모둠 토론(소그룹별 분임토의)
 - 5. 최종 논의결과 정리

▶ 발표논점 :

「비엔나인권대회공대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공대위」 「국가인권위바로세우자 연대회의」 등 지난 10년간 시도했던 다양한 연대운동의 시도, 혹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안별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운동이 보여준 성과와 오류, 한계, 방향 등을 짚어봄.

▶ 취지 :

‘연대운동’을 바라보는 인권단체들 내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대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함.

▶ 발표자 : 위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싶은 단체라면 누구나.(단, 사전 원고제출)

(2) 소주제토론(각 주제별 토론 동시 진행)

- ▶ 주 제 : -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 인권교육의 전략
- 사회권운동의 전략
-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형사소송절차와 인권)
- 과거청산의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운동
- 인권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추가 제안 가능

- ▶ 방식 : 해당 주제별 참가신청 접수(동시 진행임을 고려해야 함).
참가의사를 밝힌 단위들 내부에서 토론 준비 및 진행

(3) 결의안 채택 및 발표

- ▶ 각 단체에서 사안별 결의안을 준비해 오고,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

4. 참가신청 및 비용

- ▶ 개인별 참가신청서 접수(신청서 별첨)
- ▶ 인권단체 활동가 - 참가비 2만원
- ▶ 일반 참가자 - 참가비 3만원

5. 일정

날 짜	일 시	프 로 그 램	내 용
11/30(토)	13:30-14:00	접 수	참가단체 및 명단 확인
	14:30-15:00	소 개	참여단체 1차 소개
	15:30-17:30	전 체 토 론	발표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자유토론 분임토론 총화
	17:50-19:00	석 식	저녁 식사 및 휴식
	19:00-19:30	소 개	참여단체 2차 소개
	19:30-21:00	소 주 제 토 론 1	주제별 토론
	21:10-22:40	소 주 제 토 론 2	주제별 토론
	22:40-	문 화 마 당	참여단체 3차 소개 및 문화마당, 뒷풀이
12/1(일)	08:00-09:00	조 식	아침 식사
	09:00-10:00	소 주 제 토 론 총 화	소주제 토론 총화
	10:00-	폐 회 행 사	1. 소주제토론 총화 내용 발표 2. 사안별 결의안 발표 3. 대회 참가자 마무리 발언 4. 폐회선언

-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참 가 신 청 서**

이 신청서를 admin@lgbtkorea.org 또는 Fax 744-7916 (한국동성애자연합)으로 보내주시시오
가능하다면, 11월 25일(오후 3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접수와 함께 납부하여 주시고, 입금후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꼭 연락바랍니다.
(담당:인권실천시민연대 신치호간사/이메일: c8640@hrights.or.kr/전화:02-749-9004)

*계좌번호: (서울은행 : 22304-2105309/ 예금주: 오창익)

1. 이	름															
2. 연	락	처														
3. 이	메	일														
4. 소	속	단														
5. 행사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준비모임 측 또는 참가자 전원에게 부탁할 게 있다면?																
6. 다음 소주제 토론 중 참가를 희망하는 토론은 무엇입니까?																
① 다음의 주제들은 현재까지 제안된 주제들입니다. 참가의사를 밝혀주시면, 토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② 소주제토론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원하시는 주제를 선별하여 두 개의 소주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	간	주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19:30-21:00		국가인권	위원회	대응	인권교육	과거청산과 인권	수사기관 인권침해	운동권내 가부장성								
21:10-22:40		국가인권	위원회	대응	인권교육	사회권 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	사형제도 폐지								
<input type="checkbox"/>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 지난 10년간 활동평가와 전망 <input type="checkbox"/> 인권교육의 전략 <input type="checkbox"/> 사회권운동의 전략 <input type="checkbox"/>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형사소송절차와 인권) <input type="checkbox"/> 과거 청산의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운동 <input type="checkbox"/> 인권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행사 관련 문의는

국제민주연대(02-3675-5805/최재훈),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053-426-2533/김철효), 다산인권센터(031-213-2105/박진), 동성애자인권연대(02-2235-7422/박종익), 새사회연대(02-925-0062/이진원),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4/이창조), 인권실천시민연대(02-749-9004/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1/안주리), 평화인권연대(02-538-4347/손상열), 한국동성애자연합(02-744-7916/김병석) 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이상 가나다순)

▶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후기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를 치르고...

이 창 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년 10월 4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6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창덕궁 뒤편에 자리잡은 국제민주연대 사무실에 모여 '모중(?)의 논의'를 진행했다. '인권단체들간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해보자는 중요한 결의를 도출해냈다. 그로부터 약 두달에 걸친 짧은 준비과정을 거쳐 11월 30일-12월 1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10월 16일 열린 1차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11월 26일 마지막 점검회의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을 통해 '인권활동가대회'의 상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다. 준비모임에 참여한 단체는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불교인권위,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청주정평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등 모두 12개 단체였으며, 특히 대구에 사무실을 둔 국제엠네스티는 이메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먼저 인권활동가대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 여러 논의가 오고간 끝에, △인권단체의 교류와 연대 △인권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 평가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침예하게 논쟁이 붙었던 지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와 전체토론의 발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였다. 각 단체의 입장차이가 뚜렷했고, 또한 일정부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와 관련됐던 논쟁은 두 가지. 하나는 활동가대회의 초청 강연자로 국가인권위 관계자를 섭외하는 문제였다. 인권위 설립투쟁시기부터 인권단체와 행보를 같이 해왔던 박노현 인권위원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대회의 위상을 고려해 김창국 위원장을 부를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준비모임 참여단체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고, 각 단체마다 인권위를 바라보는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론이었으며, 결국 '초청강연'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논의는 정리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활동가대회 참여를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초

청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견해와 공식초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맞부딪쳤고, 결국 이 문제는 '초청공문을 보내지 않는 대신,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의 대회참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3명의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활동가대회에 참관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활동가대회에선 두 가지 토론마당이 마련됐다.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토론'과 8개 주제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소주제토론'이다. 전체토론은 '한국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연대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준비되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점은 누구에게 발제를 맡기느냐는 문제였다. 준비모임의 첫 논의에서는 '활동가에게 발제를 맡기자'는 견해와 '중립적인 입장의 학자에게 발제를 맡기자'는 견해가 충돌한 가운데, 활동가에게 발제를 맡길 경우 특정단체의 입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학자에게 발제를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학자가 발제를 제대로 하기엔 힘든 주제'라는 취지의 재론 요청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었고, 결국 "발표를 원하는 모든 단체에게 발표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주제토론은 △인권교육 △국가인권위 대응 △과거청산과 인권 △사회권운동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 인권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 문제 △사형제도 폐지운동 등 모두 8개의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이밖에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의 문제 ▲각 단체 재정과 회계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인터넷 검열문제 대응 ▲군 인권문제 대응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 및 긴급대응 체계 등의 주제도 제안됐지만, 준비단위의 역량 부족으로 토론마당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활동가대회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35개, 참여 인원은 140명이다. 참관자격으로 온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제외한 단체 소속의 활동가는 모두 130명이었다. 전국적 활동망을 갖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두 21명의 회원이 참여해 최대 참여단체로 기록된다. LG 전자의 왕따 피해자 정아무개 씨도 이번 대회에 참여해 자신이 겪은 인권피해 상황을 인권단체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뒤, 12월 5일 열린 평가모임에서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고,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열의를 확인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소주제토론 주제가 풍부하지 못했던 점이나 소수자운동에 대한 고려 부족, 행사의 성격과 목표 불명확, 참가자 편차 문제 등 향후 극복해야 할 지점들도 여러 부분 제기됐다.

2002 인권활동가대회의 화두는 '연대'였다. 이제 '연대'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2003년 인권활동가들 앞에 구체적으로 놓여진 숙제다.